

의안번호	제 408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자	김 양 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6년 5월 31일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408
------------	-----

(김양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년 5월 31일

발 의 자 : 김양희, 윤홍창, 정영수,
이종우, 박봉순, 임병운,
김학철 의원

1. 제정 이유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애국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실시하는 충북지역 보훈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방보조금 지원(안 제4조)
-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안 제5조)
- 마.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점검(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5조
- 3)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 제8조
-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 제4조

나. 관계부서 협의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진로인성교육과
협의 완료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16. 5. 3. ~ 5. 23.(20일간)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애국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수행하는 충북지역 보훈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단체” (이하 “단체” 라 한다.)란 국가보훈관계 법령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충청북도 지역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2. “통일·안보교육” 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3. “희생·공헌자” 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의를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한 정의를 말한다.
5. “지방보조금” 이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교부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및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현장체험교육 등의 교육활동
 2.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행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및 교직원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2년 이상 해당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 ①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목적대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등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시행 2013.11.14.] [법률 제12104호, 2013.8.13., 일부]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8.4.]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통일교육 지원법[시행 2014.2.14.] [법률 제12040호, 2013.8.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09.10.19.]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11.7.28., 2013.3.23., 2013.8.13.>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8.12.31.]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97호, 2015.2.3., 일부개정]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4조의2제6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재향군인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4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대상·승인기준·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4조의2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 수익금의 사용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2.3.]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4. 광복회의 회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

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5. 4·19민주혁명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7.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9.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7.14.]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3.] [총리령 제1174호, 2015.7.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2.6.29.>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
 -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
3. “전상군경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이하 “6·18자유상이자”라 한다)
 -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3의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전상군경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6·18자유상이자를 포함한다)
 -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항 제13호·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6·18자유상이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2.30.] [총리령 제1227호, 2015.12.30., 타법개정]

제4조(설립허가) ① 국가보훈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설립목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과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
 -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나.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
 - 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바. 이 규칙에 따라 이미 허가된 비영리법인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마.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국가보훈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5.5.15.] [충청북도조례 제3790호, 2015.5.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

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